

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
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

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7월 6일
- 회부일자 : 2022년 7월 7일

3. 제안이유

- 2022년 4월 15일 및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또는 폐지된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부서 명칭 변경(2022. 7. 1. 시행)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(안 제1조 ~ 제6조)
 - －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
 - －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
 - －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 - －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

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-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
○ U대회추진과 폐지(2022. 4. 15. 시행)에 따른 조문 삭제
(안 제5조)

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5. 검토의견

금번 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및 2022년 7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 첫째, 2022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6건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고,

둘째, 2022년 4월 15일 시행된 조직개편에서 U대회추진과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에서 인용된 U대회추진과를 삭제하는 것임.

금번 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5일 및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. 끝.